

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서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-107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3. 11. 19.

발 의 자 : 서종수·강성국·김수진
김순금·박영길·오진아
유동균·이필례·장영숙
조남진·한일용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·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- 나.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마.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(제 9조)
- 바.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3. 제정근거

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4. 조 례 안 : 불입

5. 예산조치 : 필요

가. 소요예산 : 57,904천원(2014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)

나. 산출기준

-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(인건비) : 47,904천원
- 마포구 실버축구단 운영 지원 : 10,000천원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3. 11. 20 ~ 11. 25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: 불입

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조 및 지원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(이하 “지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·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
2.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
3.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
4.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영
5.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
6.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
7.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
8.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
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5조(비용의 보조 등)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중복지원의 금지)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(예산 등의 보고) 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8조(결산 등의 보고) 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

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조(표창)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”



마포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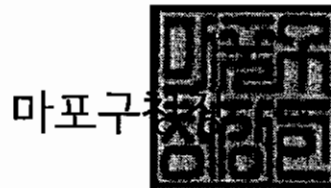


수신자 마포구의회의장
(경유)

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관련 검토의견 제출

1. 마포구의회-5658(2013.11.20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제정과 관련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 임 :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의견서 1부, 끝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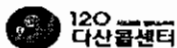
★주무관 전은하 노인복지팀장 박창열 사회복지과장 11/21 김은영

협조자

시행 사회복지과-52234 (2013.11.21.) 접수 마포구의회-5722 (2013.11.22.)

우 121-7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(성산동 370) /<http://www.mapo.seoul.kr>

전화 02)3153-8852 /전송 02)3153-8899 / eunha999@mapo.go.kr / 공개



<사는 구는 달라도 번호는 하나! 120>
<앞으로는 집에서 「민원24」로 처리하세요!>



의원발의 제정조례안 의견서

조례안 제명	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 관한 조례안
발의 의원	서종수 의원 외 10명
소관부서	사회복지과
상임위원회명 및 상정예정일	복지도시위원회, 2013. 11. 26 상정예정
사전보고 단계	
검토의견	조례 제정에 동의함
예산편성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요예산 : 57,904천원(2014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) ○ 산출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(인건비) : 47,904천원 - 마포구 실버축구단 운영 지원 : 10,000천원